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연구*

황미혜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 2.1. 소수자우대정책과 다문화사회
 - 2.2.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3.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 3.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현황
 - 3.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4.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5. 결론

<Abstract>

Hwang, mi-hye, 2021. 10. 20. The research of Multicultural Society Between Reverse Discrimination and the Related Policy Measures based on Affirmative Ac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9, 121-144. This paper purpose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092779).

to indicate that the affirmative action adopted to increase multicultural society rates in Korean labor market has lost the original meaning of its own, through examining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which had employed affirmative action before Korea did and reviewing scholarly debates about instrumentalizing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is more controversial or more divisive than any other issues in America.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ent Fisher v. Texas At Austin back to the lower court for additional review. The Court held that because the Fifth Circuit did not hold the University to the demanding burden of strict scrutiny articulated in Grutter and Bakke, its decision affirming the District Court's grant of summary judgment to University was incorrect. Affirmative action is originally enacted to reward people who suffered inequality that had been historically reproduced by the discrimination in the past; however, this meaning of compensatory justice has tended to disappear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applying it in Korean society. Especially, in the America. where the strong effect of neoliberalism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as existed, affirmative action has been replaced by the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or the emphasis on diversity. Affirmative action in Korea has been through similar changes. Also, the primary focus of this paper is on government affirmative action effort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Affirmative Action, Instrumental Affirmative Action, Reverse Discrimination

1. 들어가기

1960년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이하 소수자우대정책)은 미국사회에서 이 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역차별은 빈곤한 백인들이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염철현, 2017).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찬반 논쟁에서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일부 구성원에 대한 지원, 시혜, 예산낭비, 진로 및 취업 등 내국인과의 역차별도 관련 이해종사들의 경험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조혜영, 2017).

미국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대표적 사례인 대학입학전형은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에서 다양한 소수인종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주면서 시작되었다(이종일, 2019). 이러한 고려가 없이는 지원자 상당수가 입학에 필요한 성적이나 등급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소수자우대정책 시행에 있어서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학들은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입학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합헌을 기준으로 시행하더라도 소수자우대정책과 관련한 역차별은 다양한 소송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사회에서 주요한 논쟁이 되어왔다.¹⁾

한편 한국의 다문화사회도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가 250만 명에 달하는 등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법무부, 2019).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Pandemic)의 영향으로 약 50만 명 정도가 감소되었다(법무부, 2021). 그러나 이민자의

1) 1896년에 발생한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separate but equal라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1954년 Brown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동에 있어서 이민을 가로막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민자의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의 이민정책 동향에서 살펴보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Justin Pierre James Trudeau) 총리의 사례만 보더라도 난민 등 이민자 유입에 대한 증가 정책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제시하였다(캐나다, 2021). 이러한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이민자 유입에 대한 배제적 정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 이행 과정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접근도 지속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갈등 또한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적 접근에서 우선은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국가적 경험을 고찰 역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따른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고찰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정책적 대응 방안의 시사점으로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2.1. 소수자우대정책과 다문화사회

2018년 다문화정책 제3차 5개년기본계획²⁾의 시행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일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초기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엽적 및 시혜성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역차별과 반다문화

2) 본 연구에서 다문화정책은 법무부의 이민자정책 5개년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5개년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담론으로 위치가 이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미국의 경험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되는 연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미국은 역사적으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며, 가장 진보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서 과거의 역사에서 흑인 및 소수인종을 차별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 주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차별을 극복하고 시정하는 차원에서 소수자우대정책으로 시작되었다(이종진, 2015).

소수자우대정책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직역하면 ‘적극적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는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³⁾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논문에서 키워드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다. ‘affirmative action’의 키워드를 다시 한국어 번역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성격에 적합한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 주로 번역되어진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22건(오대성, 2010; 2011), 소수자우대정책 25건(이종일, 2018; 염철현, 2017) 적극적 평등실현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주요 변천사를 나타내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용어 사용에서 인종의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염철현(2013)의 연구에서 정의한 소수자우대정책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 1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

시기	개념 변화	주요 개념
1960년대	과거차별 보상논리	기회평등, 역사적차별보상
1970년대	보상 논리 제도화	고용의 목표, 이행시간표, 결과의 평등, 배려조항
1980년대	보상 실질 적용과 역차별	집단의 구제는 역차별 (제14조 평등조항 개정)
1990년대 이후	다양성? 역차별?	정치적 올바름(공정성)

출처: 이종일(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이와 같이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용어는 1961년에서 1963년까지 케네디 정권에서 소수자를 고려하는 의미였다. 그리고 1963년에서 1969년까지 존슨 정권 시기에서는 소수자우대라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레이건 정권(1980년대) 시기에서 비로소 기존의 소수자우대정책이 개정된 헌법 제14조 규정에 위반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차별에 대한 논쟁은 1990년대 조지 H. 부시 정권 시기에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은 시기에 따라 미국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천하였다.

김혜순(2007)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인종과 민족의 차이로 인해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누구든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윤인진(2008)의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 범주 안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다양한 문화를 단일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인정 및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하였다. 류지현·김현주(2021)는 다문화사회 등에 관련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2007부터 2020년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 방법으로는 정책 제안, 비판, 다문화사회의 지향점 등을 주장한 규범적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2.2. 다문화사회에서의 역차별

역차별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에서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영남소외론과 호남역차별론이 등장한 것과 유사하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호남소외론과 TK지역차별론이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김병선, 2010). 또한 김병선(2010)은 이러한 소외론과 역차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민자 인적자원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산업구조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이민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구성원 중에서도 국민됨을 전제로 한국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 등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요 정책 대상이다. 이러한 주요 정책 대상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양극화, 소외, 차별, 심화된 경쟁 등과 같은 다각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성, 2012; 최경호, 201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 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Positive Action’ 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가 제공하는 국내학술지 자료 중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용어 검색에서 논문 DB는 총 680건으로 검색되었다. ‘affirmative action’을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을 때는 각 논문의 방향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번역된 용어는 소수인종우대정책 연구 22건(오대성, 2010; 2011), 소수자

우대정책 연구 25건(이종일, 2018; 엄철현, 2017), 적극적 평등 실현 연구 456건(이재희, 2016; 전은주, 2019)이 검색되었다.

미국의 소수우대정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교육 및 고용 등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정책에 해당되므로 차별적인 취급(preferential treatment)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종일, 2019).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⁴⁾을 들 수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민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성들과 소수인종들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lous(1996)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으며, 실업률은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정도 높다는 것을 근거로 소수자우대정책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반면 소수자우대정책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만들어 이분법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역차별을 유발시킨다는 반대론적 주장도 있었다(Plous, 1996).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내국인들의 실업율 증가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토마스 소웰과 셀비 스틸(Sowell, 1984, Steele, 1992)은 소수우대정책은 소수자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해고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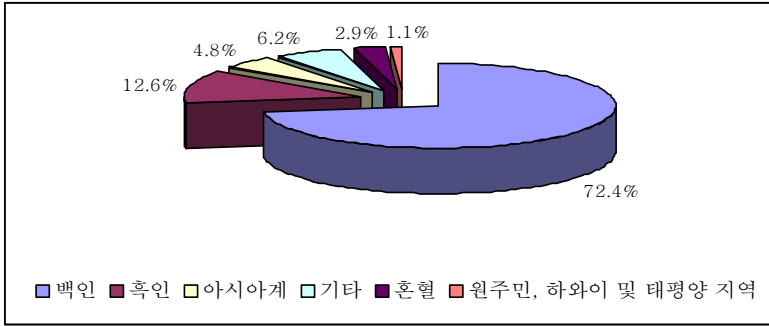
4)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수호를 위해 로저 볼드윈과 다른 이들이 1920년 뉴욕 시에서 만든 조직을 말한다.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비교적 흥미가 없는 소송사건을 맡아 변호했으며, ACLU의 취지에 비호호적인 사람들도 시민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송사건의 변호를 맡아주었다(다음백과).

3.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3.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현황

소수자우대정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학 입학정책을 다룬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김춘환, 2013; 염철현, 2011, 2013; 오대성, 2012; 최경호, 2014). 이러한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이 할당제 비판과 더불어 다양성 확대의 시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케네디 정부가 ‘Affirmative Actio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Positive Action’ 보다 내용의 전달성이 정책에 좀 더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염철현, 2013).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사회통합은 1960년대 시민단체에 의해서 인권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961년 케네디 정권 시기에 기초가 마련된 소수자우대정책은 흑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한 일종의 완충 작용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은 미국사회가 단순히 백인으로부터 흑인 등 소수자를 보호 및 교육과 직업 등에 있어 차별 방지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882년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백인은 전체 이민의 3분의 2를 차지한 구성원은 고트족이었다. 그리고 독일인은 33%, 스칸디나비아인 14%, 영국인 14%, 그리고 약 5%가 대영제국에 속하는 캐나다와 뉴펀들랜드 출신들이 차지하였다. 이에 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우월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운 차별적 배제모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세기 초에는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이, 1965년 이후부터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이 주종을 이루었다(김복래, 2009). 아래의 <그림 1>에서는 2010년 인구 통계는 백인이 72.4%에 이르고 있었으며, 다양한 소수민족과 혼혈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6%이다.



출처 : 미국 인구통계국

<그림 1 2010년 미국의 인구구성>

아래의 <그림 2>는 2020년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비해 2020년에는 백인의 비율이 61%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림 2>에서는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사회도 백인 인구 비율의 감소, 히스패닉 인구 비율의 증가 등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처 : 미국 인구통계국

<그림 2 2020년 미국의 인구구성>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은 살펴보았듯이 미국사회 내에서 지위가 다소 절하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회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조치이다. 이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소수자들의 시민적 참여가 높아졌으며, 소수자들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가능의 기회 제공이 목적이었다.

3.2.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 사례

미국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차별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미국의 불문법 특성에 따른 경향은 판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예컨대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라는 논리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던 Plessy v. Ferguson. 163 U.S. 537(1896) 판결⁵⁾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흑인 및 백인에게 각각의 교육시설 제공은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이를 위헌이라고 판시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⁶⁾을 통해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판결은 오로지 인종을 근거로 하여 공립학교에서 아동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물적 및 외적인 조건들이 평등하다 할지라도 소수집단의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5)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유명하다. 본 판결은 훗날 미국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Bor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1954년)을 통해 폐기된다.

6) 이 사건의 발생은 1951년 미국 캔자스 주(State of Kansas) 토피카(Topeka)에 살고 있던 8살 흑인소녀 린다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1마일 거리의 흑인 대상 학교를 매일 도보로 가야 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린다의 아버지인 올리브 브라운은 집에서 가까운 백인들만 다니는 썬너초등학교로 전학을 신청하였으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장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 이와 같은 거절에 몹시 분노한 올리브 브라운은 소송을 하게 된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백인 아동과 유색인종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유색인종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것이 법에 의해 인가된 것일 때 영향은 더욱 커지며, 열등의식은 아동의 면학 의욕을 위축 시킬 수 있다(김기하, 2010). 브라운 판결의 역사적 결정은 당시 알 위런 대법원장이 빠른 기간 내에 남부에 존재하고 있던 불평등한 인종분리 교육을 통합하라고 주 정부에 명령하였다. 그러나 남부의 주에 속한 백인학교 약 3천여 개 중 약 600개 정도가 통합한 것에 불과하였다. 브라운 판결은 공교육이라는 한계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장소의 인종분리까지는 폐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브라운 판결은 인종차별 철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청구인 측 변호사였던 더굿 마셜(Thurgood Marshall)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연방 대법관의 위치에 올랐다.

이후 1960년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Bakke 사건, Weber 사건, Wygant 사건, Scott 사건 등에서 차별은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의 다각화 방안의 시사점을 찾고자 미국의 Bakke 사건, Weber 사건을 사례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확인하고 차별 금지를 낳게 한 판례이다.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통합을 강제한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2.1. Bakke 사건⁷⁾

Allan Bakke(이하 Bakke) 사건은 미국의 백인 남성이 캘리포니아대(UC-Davis) 의과대학에 낙방하여 불합격취소청구를 대학을 상

7) 대학입학정책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여부가 처음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1978년 In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판결9에 해당된다(최희경, 2019).

대로 요구한 소송에 대한 사건이다(오대성, 2010). Bakke는 1973년과 1974년 각각 의과대학에 지원했지만 모두 불합격하였으며, 자신보다 낮은 점수의 소수인종 학생이 합격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대학은 소수인종 지원자들을 위해 소수자우대정책을 적용하여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978년 4월 아슬아슬한 표차이로 UC-Davis 의과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일부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그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절대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연방 민권법 6조에 위반되므로 원고(Allan Bakke)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이 판결에서 루이스 파우웰(Powell)판사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하나의 전형요소로서 고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종에 따라 일정한 수를 할당해 놓은 절대적 할당제(rigid quotas)는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인종을 전형요소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결국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제한적 합헌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소수자우대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올바르게 않은 할당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미에 해당된다. 이후에 여러 대학에서 할당제의 대안으로 가산점제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우대정책의 방법을 시도했으나, 이러한 가산점제도도 나중에 위헌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3.2.2 Weber 사건

미국의 Kaiser 알루미늄 화학회사(Kaiser Aluminum & Chemical Corporation 이하 Kaiser)는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는 철강산업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차별 철폐 합의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Kaiser의 흑인노동자 채용목표는 Kaiser의 공장이 위치한 지방의 노동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흑인노동자와 백인노동자를 위한 저숙련노동자의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공장 내에 만들어졌다. 이러한 저숙련노동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완료해야만 숙련노동자로 취업이 되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근무 연수(seniority) 순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50%의 자리가 백인들에게 열려있었다.

Kaiser가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행되었던 시행된 연도에 흑인 7명, 백인 6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가 선발되었다. 이 당시 흑인 7명 중 최단기 근무자는 참가신청이 거부된 백인 중의 한 사람인 Weber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Weber는 Louisiana주 Gramercy시에 위치한 Kaiser에 고용된 저숙련 백인노동자로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백인신청자들보다는 근무연수가 적었으나, 흑인노동자들보다는 근무연수가 많았다. Weber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인 선발기준이 고용 등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1964년의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에 위배되어 위법이라 주장하였다.

Weber는 Kaiser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변재옥, 1992). Weber 사건에 대한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민권법 제7조에 대한 Weber의 해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숙련노동자를 위한 종래의 전통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사적(私的) 집단’에 의해 ‘자발적으로(voluntarily)’ 채택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Weber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민권법 제7조가 소수인종들에게 대한 어떠한 우선적 처우도 금하고 있다는 Weber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자우대정책이 백인노동자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흑인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백인노동자 해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백인노동자의 승진을 영구적으로 금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종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종적 불균형을 단지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그간 소수인종들에게 제한되었던 직업군들에서 드러나는 인종적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소수자우대정책 조치에 해당된다. 즉 자발적으로 채택하려는 사적 영역들에게 민권법 제7조가 남겨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김영환, 1992).

4.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소수자우대정책의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이 2%로 늘어났으며, 향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특히 농어촌국제결혼이 급증해온 만큼 지역대학의 준비가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18). 고른기회전형(정원내)이나 사회통합전형(정원내), 사회배려대상자전형(정원외) 등을 확대하는 추세다. 다수의 국립대와 교대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한 입시전형을 늘려 이들에 대한 입시 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소수자우대정책은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게 과거의 차별에서 오는 불평등한 처우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미국에서 논쟁이 심한 쟁점 중의 하나로 특히 고등교육 분야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국내 주요 29개 대학 중에서 23개 대학이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대학입학전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배려대상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이다(김빛나라 외, 2020). 이러한 구조라고 할지라도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입학전형 우대정책은 대학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한국의 대학입시전형에서 다문화가정자녀가

8) 2018년 기준 23개 대학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전형 모집인원 669명이다.

선택할 수 있는 특별전형도 확대되는 추세로 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대학 수는 고려대, 서울고대, 이화여대 등 72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다문화가정자녀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공무원채용법정부계획, 2019). 또한 안산시는 2019년 11월부터 이민자 아동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내국인 학생들과의 역차별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8).

2021년 11월 기준 이민자 수가 약 200만 명 정도를 넘어 국내 총인구의 약 3% 정도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한국경제(10.15) 보도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2030년엔 이민자주민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며, 총인구 대비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김세현(2018)은 다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문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체류 유형이나 유입 형태 및 다양한 국적과 배경, 한국 내 거주지역의 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민자의 증가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유입되는 구성원 중 외국인근로자(E-9)들은 고용허가제에 의해 유입이 되어 순환형태에서 조금씩 거주가 장기화로 완화되어 가고 있다. 물론 장기화 대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사회에서 장기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 한국 다문화사회의 소수자우대정책>

특	정책방면	내용	우대	사례
정 소 수 자	대학입학 전형	다문화가족 자녀 배려	정원 외 3% 할당	대학입학 선발
	산업현장	취업 근로자 기간 완화	4년 10개월 2회 취업 가능	성실근로자 취업 제도

출처: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재정리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의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대학 입학전형에도 다문화가정자녀 특례 및 재외국민 특례, 북한이탈주민 특례⁹⁾ 등의 제도 또한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충원하는 것은 소수자우대정책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이미 3차 5개년 기본계획정책을 시행하여 2022년이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향후 4차 5개년 기본계획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역차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학령기 진입과 대학입시 및 취업 등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학력 취득, 법무부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등의 학습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가 유창해짐에 따라 고용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역차별의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전홍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배려자 전형의 한 종류인 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을 알아보아 이학 전형의 특성을 고려한 추후지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결혼의 영향으로 2020년 전후로 다문화가정자녀의 대학 진학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다. 대학은 2007년 입학사정관 전형제도의 시범실시 및 도입

9)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 해당된다.

이 되었으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가지 전형 중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전형은 특별전형이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정의된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다수가 수시모집 정원 내의 특별전형 중 대학의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고른 기회 특별전형에서 선발된다. 반면 특별전형은 고교졸업 및 예정자 학력을 소지하였다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특별전형은 별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부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를 위한 정원 내 고른 기회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만학도, 주부, 농어촌·도서벽지학생, 서해5도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에서 정원 내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전국 9개 대학에서 285명이 해당되었다. 정원 외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157개 대학에서 4,517명의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와 같은 입시전형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다변화 되어가는 다문화사회에서 대학의 다양한 입시전형 우대 대상은 다문화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수자우대정책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 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기 역차별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다문화사회 고찰을 야기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대안교육 다변화 정책에 흐름에 따

라 대구의 달구벌고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 30%를 다문화특별전형으로 도입하고 있는 최초의 입학전형이라 할 수 있다. 달구벌고등학교는 대구 유일의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로 모집인원 40명 중에 30%인 12명의 다문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졸업한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에 문제가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분야에서는 2018년 이스타항공 공개 채용에서 다문화가정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특별전형은 국제노선 취향 확대로 제2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수용 증대와 이민자 고객들의 편의 제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즉 소수자우대정책 이론(Affirmative Action Theory)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고 있다.

5. 결론

기존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 복지, 생애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는 소수자우대정책을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학문 영역의 지평 확대가 기대되는 연구로서 학술적 관심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 사례인 Bakke 사건과 Weber 사건은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에서 비교적 초기적 역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사례는 대학입학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특례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문화사회 상호간 역차별 확산 방지 예방은 지역 및 소수자 구성원 특성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다문화사회에서 상호간 역차별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정책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 중 하나는 지자체 내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따른 언론홍보 등 매체를 통한 올바른 홍보정책도 필요하다.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교육, 즉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에 앞서 고찰한 내용에 대한 시간 등 추가 보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중앙부처의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의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경근·심재휘·김술(2019).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 지형 및 그 영향요인, <교육문화연구>, (25)6호, 5쪽-28쪽.
- 김병선(2010). 차별과 역차별의 변주곡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신문에 나타난 지역주의 보도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0)4호, 40쪽-65쪽.
- 김빛나라·주철안(2020). 사회배려대상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4호, 227쪽-247쪽.
- 김승철(2017). 중소기업 구성원 상호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구성주의적 컨설팅 사례연구, <분쟁해결연구>, (15)2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5쪽-35쪽.
- 김연진(2003). 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 소수세력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과 그에 대한 논쟁, <미국사연구>, 18호, 159쪽-185쪽.

- 김영환 (199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순(2007).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호, 36쪽-71쪽.
- 김혜순(2017).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입법과 정책> 9호, 31쪽-55쪽.
- 곽선화(201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A 적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2)5호, 73쪽-92쪽.
- 류지영·정유리·전미란(2020). 사회통합전형 과학고등학교 입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창의정보문화연구>, (6)1호, 1쪽-13쪽.
- 류지현 김현주(2021). 한국의 다문화연구 경향 고찰, <인문과학연구>, (42), 29쪽-51쪽.
- 문미경(2014). 적극적 조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젠더리뷰>, 35호, 69쪽~73쪽.
- 변재옥(1992),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에 관한 判例, 미국헌법연구, (3), 27쪽-53쪽.
- 신지원·류소진·이창원(2020). 구조적 인종주의와 인종불평등: 미국 내 최근 인종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0)4호 41쪽-80쪽.
- 심양섭·김지영(2016).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8호, 1쪽-31쪽.
- 심지수·김혜숙(2018). 적극적 조치에 대한 찬성 태도 이끌어내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호, 23쪽-45쪽.
- 심재휘·김술·김경근(2020). 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입시에서의 사회적 약자 우대에 대한 태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0)2호, 43쪽-73쪽.

- 염철현(2013). 소수자우대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教育 法學 研究>, (25)2호, 109쪽-134쪽.
- 염철현(2017). 주헌법(州憲法) 개정을 통한 소수자우대정책 금지에 따른 법적 논쟁과 전망: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2014)을 중심으로, <教育 法學 研究>, (29)4호, 97쪽-119쪽.
- 오대성(2010).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法學論叢>, (17)호, 157쪽-181쪽.
- 오대성(2011).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법학논총>, (31)3호, 641쪽-671쪽.
- 윤자영(2016). 2016년 여성 노동시장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은수미(20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7년째 무시한 기업·공공기관 361곳,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 이수연(2016). 고용상 구조적 차별의 시정과 적극적 조치: 캐나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2호, 193쪽~240쪽.
- 이승협(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여성연구>, (90)1호, 7쪽~43쪽.
- 이영민 외(2014). 20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양성평등 컨설턴트 양성과정 개발 연구, <노사발전재단>.
- 이종일(2019), 한국 소수자우대정책의 특징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6)3호, 1쪽-20쪽.
- 이재희(2016). 헌법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통한 사회적 차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안암 법학> (50), 159쪽-197쪽.
- 전은주(201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6)20호, 8쪽-27쪽.
- 조혜영(2017).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 (11)3호, 135쪽-159쪽.
- 조혜영(2017).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개선 방안 모색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호, 689쪽-699쪽.
- 조혜원·함인희(2016), 기업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23)2호, 49쪽-81쪽.
- 최희경(2019). 미국 대학입학정책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성여부. <世界憲法研究>, (25)2호, 97쪽-129쪽.
- 하재봉 (199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판례, <미국헌법연구>, 3호, 27쪽-53쪽.
- Beckwith. F.J and Jones. T.E(1997). *Affirmative: Action-Social Justice or Reverse Discrimination*, NY: Prometheus Books.
- Kurtulus, Fidan A(2012). “*Affirmative Action and the Occupational Advancement of minoritics and women during 1973-2003*”, *Industrial Relations*, 51(2), pp. 213-245.
- L. Sigelman and F. Welch(1991). *Black American' s views of racial inequalilty*,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bharwal, Meghna(2013). “*From Glass Ceiling to Glass Cliff: Women in Senior Executive Serv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5, pp. 399-426.
- Shelby Steele(1990). *The Content of Our Character: A New Vision of Race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20.
- Thomas, Sowell(1984). *Civil Rights: Rhetoric or Reality*. New York : W. Morrow. 33(60).
- Torres, Gerald(2015). “*Neoliberalism and Affirmative Action*”, *Cultural Dynamics*, 27(1), pp. 43-62.
- Sax, L. J. & Arredondo, M. (1999). *Student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0(4), pp. 439-459.

Knight, J. L. & Hebl, M. R. (2005). *Affirmative reaction: The influence of type of justification on nonbeneficiary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lan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3), pp. 547-568.

<웹사이트>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8m1293a>
(2021. 08.21. 14:05 검색)

미국 인구통계국(2010), <http://2010.census.gov/2010census/data>
(2021. 09.11. 13:50 검색)

미국 인구통계국(2020), <http://2020.census.gov/2020census/data>
(2021. 09.11. 22:00 검색)

필자 소개

성 명 : 황미혜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샘로485길 65 [우편번호]46234
전화번호 : 010-2601-9168
전자우편 : hmh68@bufs.ac.kr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